

# 2019년도 제28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2. 10.(화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19-27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676건(안건번호 제2019-161096호~16156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19-161096호~161101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전송을 중단한 게시물에 대한 사안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콘텐츠를 전송하였고 심의대상 게시물의 전송이 중단되어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영상물 등이 불법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19-161102호~161110호는 웹하드 사이트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등에 대한 사안으로,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크래킹(cracking) 또는 크랙(cracked) 프로그램, 라이선스 키(license key)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심의대상 게시물의 프로그램과 저작재산권자의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한지 여부가 조사되지 아니한 점, 교육기관용 또는 공공기관용 프로그램을 웹하드에서 전송하는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66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계정 396건(안건번호 제2019-7372호~7767호).
  - 회의결과 :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235개 안건은 가결하고, 동일 게시물에 대해 중복으로 청구한 1개 안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46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28개 안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부결사유 중복 14건).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8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19-27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4쪽의 카페명, 5쪽의 블로그명, 14쪽의 밴드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 해당 정보는 비식별 처리한 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C 위원 : 해당 카페명, 블로그명, 밴드명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 B 위원 :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카페명, 블로그명, 밴드명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19-161096호~161561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1,676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1096호~161101호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건임. '☆☆☆☆' 사이트 운영자는 민원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어강사 프로필, 유튜브 영상물을 임베디드 링크한 강의 소개 영상 등의 콘텐츠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접 심의대상 게시물을 전송하였으나,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은 전송이 중단되어 있음.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한 콘텐츠는 영어 강의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별도의 합법 시장을 상정하기 어려움.

우리 심의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는 시정권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61096호~16110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1096호~161101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콘텐츠를 전송한 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심의대상 게시물의 전송을 중단한 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영상물 등이 불법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어강사 프로필의 저작물성 및 불법 복제물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고 강의 소개 영상은 민원인이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물을 임베디드 링크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음.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민원인에게 관련 내용이 충분히 안내되었고, 민원인이 이해하였으므로 해당 안건은 부결하여도 무방할 것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61096호~161101호는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61102호~16111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오토데스크(Autodesk)사의 3DS MAX, AutoCAD, Sketchbook Pro, 한글과컴퓨터사의 한글 2018, 한컴오피스 2014,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Office 2016, Windows 7 프로그램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19-161102호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불법복제물은 오토데스크(Autodesk)사의 '3DS MAX'이고, 웹하드에서 390 캐시에 판매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은 크랙 및 시리얼 번호가 없음.  
(안건번호 제2019-161103호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불법복제물은 오토데스크(Autodesk)사의 'AutoCAD'이고, 웹하드에서 240 캐시에 판매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은 크랙 및 시리얼 번호가 없음.  
안건번호 제2019-161103호 게시자는 안건번호 제2019-161102호 게시

자와 동일인임.

(안건번호 제2019-161109호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불법복제물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Windows 7'이고, 웹하드에서 22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은 크랙 및 시리얼 번호가 없음.

(안건번호 제2019-161104호~161105호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불법복제물은 한글과컴퓨터사의 '한글 2018'이고, 웹하드에서 6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은 크랙 및 시리얼 번호가 없으며, 교육기관용임.

(안건번호 제2019-161106호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불법복제물은 한글과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2014'이고, 웹하드에서 9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은 시리얼 번호가 있으며, 공공기관용임.

그런데 안건번호 제2019-161102호~161110호는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크래킹(cracking) 프로그램이나 라이선스 키(license key)를 제공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dead copy)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함.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함.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61102호~16111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프로그램의 경우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합법과 불법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프로모션 프로그램,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 등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인데 이에 대한 DB나 라이선스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라이선서가 스스로 상황을 정리해서 보호원에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게다가 관리자가 신고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불분명한 자료들을 가지고 여기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임.

주요 소프트웨어 사업자들한테서 여러 가지 무료 버전의 목록, 크랙과 비크랙을 구별하는 기술 등에 관한 DB를 요청해서 보호원이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B 위원 : 관리자로부터 제공받은 DB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원이 사안마다 일일이 대조해서 판단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될 수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에는 현재 소프트웨어 분야의 감정전문가가 없음. 심도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원에 감정 기능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A 위원 :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안이 종종 올라오고 있음. 이에 대해서 합법과 불법을 판단할 수 있는 DB나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사유로 부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B 위원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자 협회, 국제 단체가 있음. 해당 협, 단체에 공문을 보내 보호원의 상황을 알리고, 이들 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 판단 기준을 만들게 하고 추후 이러한 판단 기준을 시정권고에 반영하는 순서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A 위원 :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임.
- B 위원 : 금번 사건에 대해서는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크래킹 또는 크랙 프로그램, 라이선스 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심의대상 게시물의 프로그램과 저작권자의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한지 여부가 조사되지 아니한 점, 교육기관용 또는 공공기관용 프로그램을 웹하드에서 전송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구성하는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각 사안 당 조사 자료만으로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의 타당성 내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61102호~161110호는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1111호~161561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방송 '더 클로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1178호는 총 15부작 미국 시즌제 드라마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390캐시(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미국 TNT 채널에서 2009. 6. 8.부터 2009. 12. 21.까지 방영했던 '더 클로저 시즌5' 임. 안전번호

제2019-161178호의 채증 일자는 2019. 11. 14.이나 시스템 등록 일자는 2019. 12. 4.임.

(방송 '히어로즈'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61180호는 총 11부작 미국 시즌제 드라마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750캐시(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미국 NBC 채널에서 2007. 9. 24.부터 2007. 12. 3.까지 방영했던 '히어로즈 시즌2' 임. 안건번호 제2019-161180호의 모니터링 일자는 2019. 11. 14.이나 시스템 등록 일자는 2019. 12. 4.임.

(방송 '히어로즈'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61187호는 총 11부작 미국 시즌제 드라마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750캐시(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미국 NBC 채널에서 2007. 9. 24.부터 2007. 12. 3.까지 방영했던 '히어로즈 시즌2' 임. 안건번호 제2019-161187호의 채증 일자는 2019. 11. 13.이나 시스템 등록 일자는 2019. 12. 4.임.

(방송 '수퍼내추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61318호는 총 23부작 미국 시즌제 드라마를 웹하드에서 90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미국 CWTV 채널에서 2017. 10. 12.부터 2018. 5. 17.까지 방영했던 '수퍼내추럴 시즌13' 임. 안건번호 제2019-161318호의 모니터링 일자는 2019. 11. 13.이나 시스템 등록 일자는 2019. 12. 4.임.

(영화 '아이리시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61452호는 2019. 11. 20. 개봉한 미국 영화를 웹하드에서 3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현재 상영 중(2019. 12. 9. 기준)이고, 최근 불법복제물로 다수 발견되고 있음. 로버트 드 니로, 알 파치노가 출연함.

(음악 'Into the Unknown (From "Frozen 2"/Soundtrack Version) (가수: Idina Menzel, Aurora)'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61467호의 음원파일은 2019. 11. 16. 발매된 곡으로 앨범

‘Frozen 2 (겨울왕국 2 OST)’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약 46개의 앨범 수록곡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음악저작물은 웹하드에서 3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음악 ‘Show Yourself (From "Frozen 2"/Soundtrack Version) (가수: Idina Menzel)’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61471호의 음원파일은 2019. 11. 16. 발매된 곡으로 앨범 ‘Frozen 2 (겨울왕국 2 OST)’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약 46개의 앨범 수록곡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음악저작물은 웹하드에서 25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음악 ‘숨겨진 세상 (Into the Unknown End Credit Version) ("겨울왕국 2") (가수: 태연 (TAEYEON))’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61474호의 음원파일은 2019. 11. 15. 발매된 곡으로 앨범 ‘겨울왕국 2 (한국어 버전)’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약 12개의 앨범 수록곡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음악저작물은 웹하드에서 2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음악 ‘합정역 5번 출구 (가수: 유산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61484호의 음원파일은 2019. 11. 16. 발매된 트로트 곡으로 앨범 ‘뽕포유’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저작물의 실연자인 유산슬이 작사를 하였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약 4개의 앨범 수록곡을 이용할 수 있음.

(방송 ‘데미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61524호는 총 10부작 미국 시즌제 드라마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340캐시(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미국 DIRECTV 채널에서 2011. 7. 13.부터 2011. 9. 14.까지 방영했던 ‘데미지 시즌4’ 임. 안건번호 제2019-161524호의 모니터링 일자는 2019. 11. 12.이나 시스템 등록 일자는 2019. 12. 4.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

건번호 제2019-161111호~16156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채증 일자와 시스템 등록 일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담당 직원의 업무 과중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음.
- C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 만화, 출판, 영상물, 프로그램, 게임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단되어 가결 의견임.
- B 위원 : 모두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이며,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A 위원 : 시정권고하는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61111호~161561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61096~161110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161111호~16156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13쪽부터 2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7372~7767호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되, 동일 게시물에 대한 중복 청구 게시물 1개 안전,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46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28개 안전(부결사유 중복 14건)은 부결함”

####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8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8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17.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